2024학년도 2학기 취득 성적 포기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학칙 제4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나. 학사운영규정 제10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2. 취득 성적의 포기

가. 신청 대상자: 재학생으로 4학년 이상 (6학기 이수, 등록 7학기 이상)

나. 대상 교과목: 성적이 C+등급 이하의 경우

다. 포기 가능 학점: 총 12학점 이내

라.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초과 예정인 경우 포기 가능

3. 신청기간 : 2024. 09. 02. ~ 09. 11. 까지

4. 주의사항

가. 교필 및 전필 교과목은 취득성적 포기 불가 단, 졸업이수학점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가능

나. 취득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

5. 신청방법

구분	내용	일정
1. 작성	취득성적 포기신청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작성([붙임 1] 참조)	2024. 09. 02. ~ 09. 11.
2. 검토	지도교수 학생상담 및 지도 후 서명	
3. 확인	학과장 확인 후 서명	
4. 제출	학생 → 단과대학 통합행정팀	